

의안번호	제619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6월 일 (제356회)

2016회계연도
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5월 31일

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

의안 번호	61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5월 31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 : 예비비 지출현황

- 회계별

(단위 : 원)

구분	건수	지출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
합계	16	2,932,492,000	2,929,032,970	0	3,459,030
일반회계	15	2,920,036,000	2,916,576,970	0	3,459,030
특별회계	1	12,456,000	12,456,000	0	0

- 상임위원회별

(단위 : 원)

위원회별	지출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
합계	2,932,492,000	2,929,032,970	0	3,459,030
행정문화위원회	16,820,000	16,804,200	0	15,800
- 청년지원과	16,820,000	16,804,200	0	15,800
산업경제위원회	2,607,529,000	2,604,087,090	0	3,441,910
- 유기농산과	1,514,409,000	1,514,409,000	0	0
- 축산과	955,000,000	952,696,460	0	2,303,540
- 산림녹지과	4,275,000	4,275,000	0	0
- 농업기술원	103,845,000	102,938,800	0	906,200
- 산위생연구소	30,000,000	29,767,830	0	232,170
건설소방위원회	308,143,000	308,141,680	0	1,320
- 치수방재과	280,784,000	280,784,000	0	0
- 도로과	14,903,000	14,901,680	0	1,320
- 구조구급과	12,456,000	12,456,000	0	0

○ 지출결정사업별

(단위 : 원)

지출결정일	사 업 명	지출결정액	지 출 액	이월액	불용액
	총 계(16건)	2,932,492,000	2,929,032,970	0	3,459,030
일반회계	소 계(15건)	2,920,036,000	2,916,576,970	0	3,459,030
2016.01.20	1.1일자 청년지원과 신설	16,820,000	16,804,200	0	15,800
2016.01.27	대설피해 복구비 도비 부담금	169,618,000	169,618,000	0	0
2016.01.27	산림시설 대설피해 복구비 도비 부담금	3,975,000	3,975,000	0	0
2016.01.27	1.1일자 승인 충북유기농연구센터 운영	103,845,000	102,938,800	0	906,200
2016.03.07	구제역 긴급방역	285,000,000	283,014,710	0	1,985,290
2016.06.30	강풍피해 복구비 도비 부담금	178,560,000	178,560,000		0
2016.06.30	산림시설 강풍피해 복구비 도비 부담금	300,000	300,000	0	0
2016.08.09	지방하천 수해피해 복구	280,784,000	280,784,000	0	0
2016.09.09	호우피해 복구비 도비 부담금	16,425,000	16,425,000	0	0
2016.09.13	농작물 가뭄대책 지원	1,000,000,000	1,000,000,000	0	0
2016.10.05	소유권이전등기 소송대금 지급	6,897,000	6,896,180	0	820
2016.10.18	도로건설사업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	8,006,000	8,005,500	0	500
2016.11.18	폭염 및 가뭄피해 복구비 도비 부담금	149,806,000	149,806,000	0	0
2016.12.08	고병원성 AI 긴급 방역	670,000,000	669,681,750	0	318,250
2016.12.08	고병원성 AI 검사용 키트 구입	30,000,000	29,767,830	0	232,170
특별회계	소 계(1건)	12,456,000	12,456,000	0	0
2016.01.05	1.1일자 구조구급과 신설	12,456,000	12,456,000	0	0

3. 근거법령 : 지방자치법 제129조(예비비)

※ 첨부 :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설명자료